

러시아와 베트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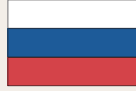
○ 공효영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전문연구원

✉ hykong@klri.re.kr

러시아

Russia



I. 러시아연방에 대한 투자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러시아 연방에 대한 투자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연방법』이 2020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기업 경영에 있어 '예측 가능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1. 입법 배경

이 법의 초기 법안은 그 범위가 지금보다 방대했고 비공식적으로 '투자법'이라고 불렸다. '투자법'에는 일반 투자제도와 프로젝트 투자제도라는 2가지 투자 제도가 규정되었다. 일반 투자제도는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의 기본적인 투자활동규칙에 관한 것이었고, 프로젝트 투자제도는 특별제도로써 『자본투자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이하 APPC)의 체결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 후 일반 투자제도는 투자법에서 제외되었고, 투자법의 규제 대상은 APPC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에 한정되었다.

2. 이 법의 대상

특별 투자제도는 APPC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APPC는 해당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주체인 민간 기업(러시아 법인으로서 프로젝트 회사를 포함)과 해당 투자프로젝트가 이행될 러시아 연방 내의 다국적 기업의 현지 법인인 공공법인(러시아 연방 및/또는 지방정부의 참여가 가능) 사이에 체결되는 협약이다. APPC는 민간기업 주도(민간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또는 집행당국 주도(공적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하에 체결될 수 있다.

3. APPC 대상

APPC는 경제 부문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게임업, 담배 및 주류제품의 생산,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도소매업, 금융기관의 활동, 주거용 건물, 상업 및 쇼핑센터의 건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에 필요한 에너지, 운송, 유틸리티, 사회적 기반시설 및 디지털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의 상환과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 조성된 대출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형태로 국가지원책을 제공 받는다.

투자 여건을 위축시키는 일정 기간 동안의 행위나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정화 조항(stabilization clause)이 투자 자본금에 따라 투자자에게도 적용된다. 특히 국가지원책의 변경, 토지구획에 대한 권리 부여 절차의 변경, 토지 소유자에 대한 추가 의무의 신설이나 권리의 축소, 도시개발 관련 절차의 변경 등에 관한 행위나 결정의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 최소 자본금 100억 루블 이상의 투자인 경우 안정화 조항의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수출관세 인상, 환경영향에 따른 수수

료를 결정할 때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 대상의 확대, 수면 물체(water objects)의 이용, 이용료 및 환경수수료 등이 있다. 안정화 조항의 적용기간은 투자금액이 50억 루블 미만인 경우 6년, 50억 루블 이상 100억 루블 미만인 경우 15년, 100억 루블 이상인 경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해당 기간을 최대 6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조세 및 수수료에 관한 법률의 변경, 수출관세율 인상, 그리고 국가지원책의 변경에 관한 행위나 결정은 APPC로 규정된 기간 전체에 적용되지 않는 반면, 기타 다른 행위나 결정사항에 관한 안정화 조항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만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 법의 진정한 효과에 대해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중에 투자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는 것은 러시아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러시아 경제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APPC 자체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2020년 제16회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총회에 참석한 회원기관들이 제공한 ALIN Legislative News 가운데 러시아 편(저자: Natalia Priskina,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을 번역·편집한 것임.

베트남

Vietnam



1. 베트남의 투자법 및 기업법 개정

베트남 국회는 2020년 6월 중순 베트남의 투자 및 기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2020년 개정 기업법』, 『2020년 개정 투자법』, 『2020년 민관협력투자(PPP)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률들은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민관협력투자에 관한 법률』은 신뢰할 수 있는 공공 파트너로서의 베트남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약속하는 것이다. 이 법은 국가와 투자자 간의 위험 분담책의 평등함과 투명성 보장, 투자 장려책, 주요 대형 PPP 사업의 외국환 잔고 보장책을 보장하는 투자, 공공재정 관리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위험분담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투자법과 기업법은 베트남 경제의 여러 부문에 민간 투자와 초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베트남의 민간기업 부문의 발전을 도울 것이다. 개정 투자법은 새로운 방식의 투자 장려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특별 투자 장려책과 지원책을 담고 있으며, 투자 장려책과 지원책이 현실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도록 투자 장려책의 원칙과 기준 및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였

다. 단기 또는 장기 투자 장려책, 매출액, 인력, 자본 지출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사업을 위한 장려책 등이 그 예이다. 투자 장려책은 또한 대형 사업, 첨단기술 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에도 적용된다.

개정 기업법은 국내외 기업들의 시장 진입 시 뿐만 아니라 투자 및 사업 과정 전반에 걸쳐 지원하게 된다.

이 글은 2020년 제16회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총회에 참석한 회원기관들이 제공한 ALIN Legislative News 가운데 베트남 편(저자: Nguyen Thu Dung, Institute of State and Law,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을 번역·편집한 것임.

II.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베트남의 정책과 법제

베트남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처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생산 요소에 대해 2020년 1분기 및 2분기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고, 동시에 금리와 은행 수수료의 면제 및 연기, 인하 정책을 도입했다.

2020년 3월 4일,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생산 및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시급한 과제와 해결책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제11호/CT-TTg에 따라 기업들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금연체이자 면제, 각종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지원책으로 전기료 및 전기사용료 인하, 모든 항공사들에 대한 항공서비스비용의 면제 또는 인하, 행정절차 축소, 물류비용 인하 등과 같은 생산비용 및 사업비용의 절감 혜택도 제공되었다.

또한 베트남 국영은행은 2020년 3월 13일에 회람(Circular) 제01호/2020/TT-NHNN을 발표하여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대출 요청을 적시에 지원 및 제공하도록 하고, 대출 신청 검토 시간을 단축하며, 대출 이자의 면제 또는 감면을 검토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지원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생산 및 기업활동 회복을 위해 연 0.5%~1.5% 인하된 우대금리로 사업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대출지원책으로 약 250조 동(VND) (약 11.4조 달러(USD))이 책정되었다.

기업의 경우, 의무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의 최소 20% 이상이 1개월 또는 그 이상의 연속된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퇴직하거나 또는 기업이 직원의 퇴직금을 지불할 자원이 충분치 않을 때 해고된 직원의 급여 지급을 위해 급여적립기금을 사용했다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야기된 직원의 퇴직 시 우대금리로 대출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여객 운송, 관광, 숙박, 식당 및 기타 특수 직업과 같이 코로나19로 타격을 크게 받은 업종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직원 가운데 의무사회보험에 가입한 직원의 50%가 임시 휴직 중이거나 코로나로 인해 총자산가치의 50%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직원들의 퇴직금과 생존보조금을 위한 사회보험금 납입을 연체이자 없이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아직 진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까지 납입 중단을 검토하여 유예시킬 수 있다. 노동조합비는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 글은 2020년 제16회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총회에 참석한 회원기관들이 제공한 ALIN Legislative News 가운데 베트남 편(저자: Hoang Kim Khuyen, Institute of State and Law,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을 번역·편집한 것임.